의안 번호	123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10.28.)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8.(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6.

나. 제 출 자: 창원시장

다. 회부일자: 2026. 10.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 10. 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의안번호 제123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주남저수지에 설치된 생태학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고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를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통합하고,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태학습시설을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주남환경학교, 탐조대로 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19조)

-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탐조대: 09:30～17:30
- 주남환경학교: 09:00～18:00

다.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을 동읍·대산면의 지역 주민, 단체를 우선하여 협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한 것을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그 밖에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입법예고(2026. 9. 15.～10. 6.) 결과: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가. 개정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편의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시 지역 주민·단체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로 운영하던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주남저수지 및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 제2조 및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 기존에 별도 조례로 규정하던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 관리와 생태학습시설 운영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의 일원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시설별 운영시간을 람사르문화관·생태학습관·탐조대는 09:30부터 17:30까지, 주남환경학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구분하고, 휴관일과 운영시간 조정 시 사전 안내 규정을 마련한 것은 시설별 운영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편의시설 위탁 시, 동읍·대산면 지역 주민 및 단체를 우선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수탁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취지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선방안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한유형	현행 조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방안
진입제한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②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협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며, 동읍 대산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단체를 우선으로 하여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 공유재산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및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손해배상 규정은 시설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시설물 파손·훼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됨.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되므로, 규정 삭제로 인한 법적 공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비하고, 사업비 지원 대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구체화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는

-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가 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한편, 종전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생태학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통합되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에 따른 위탁으로 보도록 명시한 것으로서, 조례 통합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타당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관리와 생태학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정비하는 한편, 편의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시 특정 지역 주민·단체에 대한 우선권을 삭제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의 정비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6. **질의·답변 요지**: 기재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